

瑞山市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2001. 3. 28
總務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2001. 3. 20
- 나. 提出者 : 瑞山市長
- 다. 回附日字 : 2001. 3. 21
- 라. 上程日字 : 2001. 3. 28

2. 提案說明要旨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崔鎮珏)

가. 改正理由

-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며, 부춘동 관할 읍내44동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,203세대에 달하며, 통·리장 1인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
- 석남동 관할 석남1동이 대로2-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 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이와 같이 통·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 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

- 3개 면·동의 취락형태를 고려 통·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 코자함.
(현행 78통 257리 1,441반 ⇒ 조정 81통 258리 1,478반)

나. 主要骨子

- 부춘동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각각 12개반으로 한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신설하고,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3개반으로 한 석남4통을 신설함[안 별표1]
- 인지면 둔당1리를 분리하여 13개반으로 한 둔당3리를 신설함 [안 별표2]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

- 서산시통·반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·면·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·반을, 리에 반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음.
- 본 개정조례안은 인지면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준공에 따른 44세대수가 입주하면서 둔당1리, 3리로 분리되어 둔당3리에 반세대수를 동별 30~40호씩 주민편의에 의하여 묶어 13개반을 두도록 하였으며
- 부춘동 읍내동 44통내 현대아파트 준공에 따라 총 915세대가 입주되어 44통을 45,46통으로 분통하고 신설되는 각통에 반세대수를 28~44호씩 주민편의에 의하여 묶어 12반씩을 두도록 하였음.

- 석남동 석남1통을 대로2-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있고 지역정서와 생활양식이 서로달라 행정업무추진과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어려움으로 “석남1통”을 “석남4통”으로 분통하고 세대수를 15~60호씩 지리적 여건에 맞게 3개반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.
- 이는 같은조례 제3조(확정기준)가 규정한 반 확정기준인 1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,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반구성이 다소 초과하였으나 이를 기준에 맞게 엄격히 분반할 경우 주민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
- 기히 본 개정조례안을 2001. 2. 1 ~ 2. 20(20일간)까지 주민에 입법예고 한바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99 호
의결(보고) 년 월 일	2001. . (제 회)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1. 3. 20.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제 199호

제출년월일 : 2001. 3. 20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인지면 관할 둔당1리에 아진아파트 44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520세대에 달하며, 부춘동 관할 읍내44통에 현대아파트 915세대가 건립되면서 총 세대수가 1,203세대에 달하여, 통·리장 1인이 관리하기에 업무의 양이 과중하고 대부분 외지에서 유입된 아파트주민과 기존의 마을주민간 유대와 화합이 미흡하며
- 석남동 관할 석남1통이 대로 2-1호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양분되어 지역정서 및 생활양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이와 같이 통·리장의 과중한 업무와 주민간의 유대 및 화합이 미흡함에 따라 각종시책의 말단침투와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
- 3개 면·동의 취약형태를 고려 통·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코자 함
(현행 78통 257리 1,441반 ⇒ 조정 81통 258리 1,478반)

□ 주요골자

- 부춘동의 읍내44통을 분통하여 각각 12개반으로 한 읍내45통과 읍내46통을 신설하고, 석남동의 석남1통을 분통하여 3개반으로 한 석남4통을 신설함 [안 별표1].
- 인지면의 둔당1리를 분리하여 13개반으로 한 둔당3리를 신설함 [안 별표2]

□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나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01. 2. 1. ~ 2. 20.
- 예고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다. 예산조치 : 통·리장 수당 및 반장활동비 2001년 추경에 반영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인지면의 둔당리의 둔당2리란 다음에 3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읍·면·동	법정리	행정리의 명칭	반의 명칭	관할 구역
인지면	둔당리	둔당3리	제 1 반	아진APT 101동(101~1502호), 상가
			2	아진APT 101동(103~1504호)
			3	아진APT 102동(101~1502호)
			4	아진APT 102동(103~1504호)
			5	아진APT 103동(1~5층)
			6	아진APT 103동(6~10층)
			7	아진APT 103동(11~15층)
			8	아진APT 104동(1~5층)
			9	아진APT 104동(6~10층)
			10	아진APT 104동(11~15층)
			11	아진APT 105동(1~5층)
			12	아진APT 105동(6~10층)
			13	아진APT 105동(11~15층)

별표 2의 부춘동의 읍내동의 44통란 다음에 45,46통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번	관할구역	비고
부춘동	읍내동	45통	1	읍내동 현대APT 101동(101~1702호)	
			2	읍내동 현대APT 102동(101~2002호)	
			3	읍내동 현대APT 102동(103~2004호)	
			4	읍내동 현대APT 103동(101~2002호)	
			5	읍내동 현대APT 103동(103~1804호)	
			6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1~2202호)	
			7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3~2204호)	
			8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5~2206호)	
			9	읍내동 현대APT 105동(101~1502호)	
			10	읍내동 현대APT 105동(103~1604호)	
			11	읍내동 현대APT 106동(101~2002호)	
			12	읍내동 현대APT 106동(103~2004호)	
		46통	1	읍내동 현대APT 107동(101~2202호)	
			2	읍내동 현대APT 107동(103~2004호)	
			3	읍내동 현대APT 108동(101~2202호)	
			4	읍내동 현대APT 108동(103~2204호)	
			5	읍내동 현대APT 109동(101~1402호)	
			6	읍내동 현대APT 109동(103~1604호)	
			7	읍내동 현대APT 110동(101~1602호)	
			8	읍내동 현대APT 110동(103~1604호)	
			9	읍내동 현대APT 111동(101~1602호)	
			10	읍내동 현대APT 111동(103~1804호)	
			11	읍내동 현대APT 112동(101~2202호)	
			12	읍내동 현대APT 112동(103~2004호)	

별표 2의 석남동의 석남동의 1통란 및 4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	비고
석남동	석남동	1통	1	석남 6-1~7-9	
			2	석남 1-2~6-102	
			3	석남 3-6~16-30	
			4	석남 6-22~16-1	
			5	석남 따롱이주택, 정인빌라	
			6	석남 20-1, 22-1, 23-6, 26-7, 27-3 28-2, 30-5, 35-7, 35-8, 35-11, 35-27, 35-30 (대일빌라, 세일빌라, 영일주택)	
			7	석남 석남빌라, 동원빌라	
		4통	1	석남 14~145	
			2	석남 82-2~208-4	
			3	석남 3-7~324-6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 1]

현					개					신							
읍·면·동	법정리	행정리의명칭	행정리의명칭	반의명칭	관할구역	읍·면·동	법정동	행정리의명칭	행정리의명칭	반의명칭	관할구역	읍·면·동	법정동	행정리의명칭	행정리의명칭	반의명칭	관할구역
인지면	둔당리	둔당1~2리	둔당1~2리		(생략)	-----	-----	둔당1~2리	둔당1~2리		(현행과 같음)	-----	-----	둔당1~2리	둔당1~2리		(현행과 같음)
		(신설)						둔당3리	둔당3리					1	아진APT 101동(101~150호, 상가)	아진APT 101동(101~150호, 상가)	
														2	아진APT 101동(103~150호)	아진APT 101동(103~150호)	
														3	아진APT 102동(101~150호)	아진APT 102동(101~150호)	
														4	아진APT 102동(103~150호)	아진APT 102동(103~150호)	
														5	아진APT 103동(1~5층)	아진APT 103동(1~5층)	
														6	아진APT 103동(6~10층)	아진APT 103동(6~10층)	
														7	아진APT 103동(11~15층)	아진APT 103동(11~15층)	
														8	아진APT 104동(1~5층)	아진APT 104동(1~5층)	
														9	아진APT 104동(6~10층)	아진APT 104동(6~10층)	
														10	아진APT 104동(11~15층)	아진APT 104동(11~15층)	
														11	아진APT 105동(1~5층)	아진APT 105동(1~5층)	
														12	아진APT 105동(6~10층)	아진APT 105동(6~10층)	
														13	아진APT 105동(11~15층)	아진APT 105동(11~15층)	

[별표 2]

현				행					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	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
부춘동	읍내동	읍내11동~44동 (신 설)		(생략)	----	----	읍내11동~44동 (읍내45동)		(현행과 같음)
								1	읍내동 현대APT 101동(101~1702호)
								2	읍내동 현대APT 102동(101~2002호)
								3	읍내동 현대APT 102동(103~2004호)
								4	읍내동 현대APT 103동(101~2002호)
								5	읍내동 현대APT 103동(103~1804호)
								6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1~2202호)
								7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3~2204호)
								8	읍내동 현대APT 104동(105~2206호)
								9	읍내동 현대APT 105동(101~1502호)
								10	읍내동 현대APT 105동(103~1604호)
								11	읍내동 현대APT 106동(101~2002호)
								12	읍내동 현대APT 106동(103~2004호)

현

행

개 선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
		(신 설)		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 할 구 역
		읍내46통	1	읍내동 현대APT 107동(101~2202호)
			2	읍내동 현대APT 107동(103~2004호)
			3	읍내동 현대APT 108동(101~2202호)
			4	읍내동 현대APT 108동(103~2204호)
			5	읍내동 현대APT 109동(101~1402호)
			6	읍내동 현대APT 109동(103~1604호)
			7	읍내동 현대APT 110동(101~1602호)
			8	읍내동 현대APT 110동(103~1604호)
			9	읍내동 현대APT 111동(101~1602호)
			10	읍내동 현대APT 111동(103~1804호)
			11	읍내동 현대APT 112동(101~2202호)
			12	읍내동 현대APT 112동(103~2004호)

현 행 개 선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
석남동	석남동	1동	1~5반	(생략)
			6	석남 14~145
			7	석남 14~132
			8	석남 82-2~208-4
			9	석남 3-7~324-6
			10	석남 석남빌라, 동원빌라
		2~3동		(생략)
		(신설)		

읍·면·동	법정동	통의명칭	반	관할구역
			1~5반	(현행과 같음)
			6	석남 20-1, 23-6, 22-1, 26-7, 27-3, 30-5, 28-2, 35-30, 35-7, 35-27, 35-8 35-11 (대일빌라, 세일빌라, 영일주택)
			7	<삭제>
			4	<삭제>
			5	<삭제>
			7	석남 석남빌라, 동원빌라
		2~3동		(현행과 같음)
		4동	1	석남 14~145
			2	석남 82-2~208-4
			3	석남 3-7~324-6